

의료법령 중 간호관련 조항의 변화 추이와 개정방안

김 흐 식

(본회 기획실장 직무대행)

I. 서 론

인간은 누구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법규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 헌법은 국가이념과 주권의 소재를 명시하고 있는 최고법규이자 근본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 헌법을 근거로 각종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등이 제정·공포되어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강제적 규범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간호사는 국민건강의 증진, 질병의 예방, 건강의 회복 및 고통경감을 기본책임으로 하는 전문직 의료인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통상적인 법규외에도 의료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료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항, 그중에서도 특히 간호관련 조항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단지 주관적인 판단만 믿고 간호업무를 수행할 경우, 본의아니게 법규를 위배하여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관계법령에는 의료법외에도 의료 또는 의료인, 기타 관계자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이 포함된다.

그 중 의료법은 국민의료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모두 의료관계법령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의료에 관한 일반법인 의료법과 그 하위법령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의료법 시행령 및 보건사회부령으로 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묶어 편의상 「의료법령」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의료법령중 간호관련 조항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현행 의료법령 가운데 간호현실에 비추어 불합리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II. 간호관련 조항의 개정 추이

현행 의료법은 6.25전쟁중이던 1951년9월 부산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국민의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는 일제하에서 시행되던 「조선의료령」이 해방후까지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민의료법은 그후 1962년3월, 전문개정과 함께 명칭도 의료법으로 바뀌면서 2차례의 부분개정이 있었고, 1973년2월 다시 전문개정된 후 6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령은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바뀐 직후인 1962년4월 제정된 이후, 1차례의 전문개정과 13차례의 부분개정이 있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은 국민의료법 제정 직후인 1951년12월 제정되어 2차례의 전문개정과 19차례의 부분개정이 이루어 졌다.

의료법 개정작업은 사회환경 또는 의료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진행돼 왔으며,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서는 의료법을 중심으로 하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포함하여 간호관련 조항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의료법령의 개정현황

(1993. 5. 31. 현재)

구 분	의 료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국민의료법 제정	1951. 9.25 법률 제221호		1951.12.25 1958. 6.26 1958.12.31	보건부령 제11호 보건부령 제23호 보건부령 제33호
1차 개정 (전문개정)	1962. 3.20 법률 제1035호	1962. 4.14 각령 제659호	1962. 5. 7 1963. 6. 1	보사부령 제77호 보사부령 제110호
2차 개정	1963.12.13 법률 제1490호			1964.11.23 보사부령 제148호
3차 개정	1965. 5.23 법률 제1690호	1965. 7.29 1969.11.17 1971.12.31 대통령령 제2184호 대통령령 제4266호 대통령령 제5915호	1965. 7.31 1966. 9.12 1969. 1.27 1971. 8. 7 1972. 3.13	보사부령 제161호 보사부령 제183호 보사부령 제239호 보사부령 제378호 보사부령 제391호
4차 개정 (전문개정)	1973. 2.16 법률 제2533호	1973. 9.20 대통령령 제6863호	1973.10.17 1974. 4.10 1975.12. 2	보사부령 제426호 보사부령 제437호 보사부령 제502호
5차 개정	1975.12.31 법률 제2862호	1976. 1.21 1976. 9. 3 1977. 2.25 1977. 8.16 1979. 7.23 대통령령 제7960호 대통령령 제8232호 대통령령 제8455호 대통령령 제8649호 대통령령 제9517호	1976.12.29 1978. 5.15	보사부령 제543호 보사부령 제595호
6차 개정	1981. 4.13 법률 제3441호	1981.11. 2 대통령령 제10566호		
7차 개정	1981.12.31 법률 제3504호	1982. 7.23 대통령령 제10873호	1982.12.31 보사부령 제717호	
8차 개정	1986. 5.10 법률 제3825호		1986. 6.25 1986.12. 4	보사부령 제790호 보사부령 제794호
9차 개정	1987.11.28 법률 제3948호	1989. 8. 7 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2.28 1990. 1. 9	보사부령 제827호 보사부령 제840호
10차 개정	1991.12.14 법률 제4430호	1992. 6. 1 1992.12.31 대통령령 제13657호 대통령령 제13814호	1992. 1.16 1993. 3. 3	보사부령 제887호 보사부령 제901호

1. 국민의료법 제정

1951년9월15일 제정·공포(법률 제221호)되어 90일이 경과한 동년 12월25일 시행에 들어간 국민의료법은 본문 66조와 부칙 9조로 구성돼 있다.

당시 시행령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국민의료법 시행세칙은 1951년12월25일 제정(보건부령 제11호)되어 1958년6월21일(보건부령 제23호), 1958년12월31일(보건부령 제33호) 두차례 개정이 있었다.

이중 간호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법 제정 이전까지 간호부, 산파, 보건부 등으로 불리던 명칭을 간호원, 조산원, 보건워으로 변경하고, 현행 의료법 상의 의료인을 3종의 의

료업자(제1종—의사, 치과의사, 제2종—한의사, 제3종—보건원, 조산원, 간호원)로 구분했다.(법 제2조)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국가시험제도가 있었으나, 간호원, 조산원, 보건원에 대해서는 국가시험이 시행되지 않고, 보건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하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했다(법 제14조).

(3) 간호원, 조산원, 보건원의 자격시험은 주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의 장이 시행하도록 했다(법 제51조).

(4) 간호원은 상병자 혹은 육부에 대한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

고, 조산원은 조산 또는 임산부, 육부 및 신생아의 보건 및 요양지도에 종사함을, 보건원은 보건지도와 요양보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규정했다(시행세칙 제1조-1951).

(5) 간호원, 조산원, 보건원은 의사의 지시가 없이는 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혹은 진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약약품을 투여 또는 의약품에 대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시행세칙 제2조-1951).

(6) 의료기관에 두는 간호원의 정원은 입원환자 5인에 1인씩 또는 진료과별로 외래환자 30인에 1인씩 두고, 그 단수마다 1인을 증가하도록 했다(시행세칙 제26조-1951).

2. 제1차 개정

국민의료법은 5.16혁명 직후인 1962년3월20일 당시 국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 국가재전최고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문개정(법률 제1035호)되면서 명칭도 의료법으로 바뀌게 된다. 본문 70조 부칙6조로 구성된 개정의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됐으며, 대체로 국민의료법 체계를 따르면서 어구표현등에 있어서 모순되는 점들을 정리했다.

이와함께 1962년4월14일 의료법 시행령을 제정(각령 제659호)하고, 시행세칙은 1962년5월7일(보사부령 제77호), 1963년6월1일(동령 제110호) 두차례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으로 변경됐다.

(1) 3종으로 구별되던 의료업자의 구분을 없애고, 의료업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을 둔다고 명시했으며, 보건원 제도를 폐지했다(법 제2조).

(2) 시행세칙에 있던 의료업자의 임무를 모법에 규정하면서, 간호원의 임무도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법 제7조).

(3) 간호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던 조산원에 대해 간호원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사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필하거나, 보사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 조산면허를 가진 자에게만 면허를 부여하도록 했다(법 제13조).

(4) 간호원 국가시험 제도를 신설하고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간호원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의 간호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의 간호원 면허를 가진 자로서 간호원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면허를 부여하도록 했다(법 제16조).

(5) 간호원등 의료업자는 매년 그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보사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면허취소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법 제17조, 제19조).

(6) 무면허자의 의료업무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간호원이 아니면 간호업무를 행하지 못하며, 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법 제25조).

(7) 각 의료업자는 중앙회(간호원은 간호원회)를 설립하고,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회원가입을 의무화했다(법 제58조).

(8) 국가시험제도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간호원, 조산원, 보건원 자격시험에 1과목 이상 합격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2년간 종전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한 자에게는 해당 면허를 부여하도록 했다(법 부칙 제2조,3조).

(9) 의료업자의 신고는 정기신고와 임시신고로 구분하고, 정기신고는 매년 5월1일을 기준으로 5월말까지 보사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에 체재중인 자는 6월15일까지 보사부장관에게 직접 신고하도록 했다. 임시신고는 의료행정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했다(시행령 제10조).

(10) 의료업자 중앙회는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3주일 내에 서울특별시와 도에 지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시행령 제24조).

(11) 의료업자는 정기신고시 소속 중앙회의 회원임을 신고서에 확인받고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했다(시행규칙 제8조-1962).

(12) 의료기관에 두는 간호원의 정원이 전년도의 1일 평균 입원환자 5인대 2인으로 상향조정됐다(시행규칙 제32조-1962).

3. 제2차 개정

1963년12월13일에 있는 2차개정(법률 제1490호)에서는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1개호만 개정됐고, 간호관련 사항은 특별히 개정된 내용이 없다. 시행규칙은 1964년11월23일 개정(보사부령 제148호)됐다.

4. 제3차 개정

3차 개정(법률 제1690호)은 1965년5월23일에 이루어져 2개월 경과후 시행됐으며 21개 조항이 개정됐으나 전체 조항수에는 변함이 없었다.

시행령은 1965년7월29일(대통령령 제2184호), 1969년11월17일(동령 제4266호), 1971년12월31일(동령 제5915호) 3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시행 규칙은 1965년7월31일(보사부령 제261호), 1966년9월12일(동령 제183호), 1969년1월27일(동령 제239호), 1971년8월7일(동령 제378호), 1972년3월13일(동령 제391호)에 걸쳐 5차례 개정됐다.

(1) 간호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기존의 정신병자, 심신박약자, 농·아·맹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마약 기타 독물질의 중독자외에 새로이 불구폐 질자가 추가됐다(법 제18조).

(2) 의료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행정처분 내용이 완화됐다(법 제19조).

(3) 보사부장관은 간호원등 의료관계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22조).

(4)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로 부터 1개월안에 면허증을 교부하도록 했다(시행규칙 제1조-1969).

(5) 면허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이전까지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 임의조항이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변경됐다(시행규칙 제5조-1965).

(6) 보사부장관은 보수교육 대상, 시간, 내용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교육실시 30일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단체 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규칙 제15조의 2-1965).

(7)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간호원을 간호보조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규칙 제32조-1969).

이밖에 이 시기에 특기할만한 것은 1966년7월 25일 당시 의료보조원법이 개정되면서 간호보조원 제도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5. 제4차 개정

4차 개정은 1973년2월16일 당시 국회기능을 갖고 있던 비상국무회의에서 전문개정(법률 제2533호)되어 6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본문 70조 부칙 8조로 구성된 이 개정법률은 현행 의료법에 까지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시행령의 개정은 1973년9월20일(대통령령 제6863호)에 있었으며, 시행규칙은 1973년10월17일(보사부령 제426호), 1974년4월10일(동령 제437호), 1975년12월2일(동령 제502호) 3차례 개정됐다.

(1) 의료업자로 지칭되어 오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을 의료인으로 개칭했다(법 제2조).

(2) 간호사 면허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전문학교 또는 간호학교를 졸업한 자, 보사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간호원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했다(법 제7조).

(3)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도 추가됐다(법 제8조).

(4) 외국 의료인 면허를 소지하고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학 및 간호학등을 전공하는 학생에 대해 보사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24조).

(5)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 중앙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회원이 된다」로 변경했다(법 제25조).

(6)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법 제28조).

(7) 의료인이 3회이상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법 제52조, 53조).

(8) 간호원에 대해 간호원 면허 외에 업무분야별 간호워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56조).

(9) 의료보조원법이 폐지되고 대신 의료기사법이 제정되면서 의료보조원법에 들어있던 간호보조원 관련조항이 의료법에 반영됐다. 이에따라 간호보조워은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법 제24조(무면허 의료행위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57조).

(10) 의료인에 대한 면허갱신을 단행하여 이 법 시행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갱신하도록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종전의 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법 부칙 제2조).

(11) 이 법 시행 당시 간호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또는 재학중인 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5년 이내에 한해 간호원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법 부칙 제3조).

(1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을 폐지하고, 의료인 국가시험을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시행하도록 했다(시행령 제11조).

(13)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등에 관한 신고를 정기신고와 수시신고로 구분하고, 정기신고는 매년 5월1일 현재의 상황을 6월15일까지(국방부 소속 의료인 및 외국에 체재중인 의료인은 7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했다(시행령 제17조).

(14) 의료인 정원관련 조항이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옮겨지면서 간호원 정원을 간호보조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대신 간호인력 수급상 필요할 경우 간호원 정원 범위내에서 보사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간호보조원으로 충당할 수 있게 했다(시행령 제24조).

(15) 의료인 면허증을 국가시험 합격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2개월 이내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1개월 이내로 환원됐

다(시행규칙 제1조－1973, 1975).

(16) 진료기록부 안에 포함돼 있던 간호기록을 별도의 간호기록부로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보존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시행규칙 제17조－1973).

(17) 의료인 중앙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보수교육 대상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보수교육 기간·교육과정등은 중앙회에서 정하도록 했다(시행규칙 제46조－1973).

(18) 업무분야별 간호원의 종류를 보건간호분야의 간호원, 마취간호분야의 간호원, 정신간호분야의 간호원으로 하고, 1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별도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했다(시행규칙 제54조－1973).

6. 제5차 개정

1975년12월31일 전체 조항수에는 변함이 없이 5차 개정(법률 제2862호)이 있었다.

시행령은 1976년1월21일(대통령령 제7960호), 1976년9월3일(동령 제8232호), 1977년2월25일(동령 8455호), 1977년8월16일(동령 제8649호), 1979년7월23일(동령 9517호) 5차례 개정됐으며, 시행 규칙 개정은 1976년12월29일(보사부령 제543호), 1978년5월15일(동령 제595호) 2차례 있었다.

(1) 간호기록부등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환원했다(법 제21조).

(2) 간호보조원에 대한 의료법 적용에 있어서 간호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법 제58조).

(3) 간호원 정원기준중 외래환자 30인에 대해 간호원 1인을 두도록 하던 것을 외래환자 12인을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하도록 하고, 치과의료기관에 두는 치과위생사는 간호원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 제24조－1976).

7. 제6차 개정

6차 개정은 1981년4월13일(법률 제3441호)에 있었으며, 시행령은 1981년11월2일(대통령령 제10873호)에 개정됐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사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개 조항 개정만 있었을 뿐 간호관련 조항의 개정은 없었다.

8. 제7차 개정

1981년12월31일에 있은 제7차 개정법률은(법률 제3504호)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됐다.

시행령은 1982년7월23일(대통령령 제10873호), 시행규칙은 1982년12월31일(보사부령 제717호) 각각 개정됐다.

(1) 간호원의 임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이 추가됐다(법 제2조).

(2) 전문학교가 전문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간호원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구체 전문학교 및 간호학교 포함)을 졸업한 자」로 수정됐다(법 제7조).

(3) 매년 하도록 되어있던 의료인의 실태 및 취업상황등에 대한 정기신고제를 폐지했다(법 제23조).

(4) 의료인은 중앙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법 제28조).

(5)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일정기간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법 제53조).

(6) 법 제2조에서 정한 간호원의 임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의 범위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의해 모자보건요원 또는 가족계획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결핵예방법에 의해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기타 법령에 의해 간호원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등으로 규정했다(시행령 제2조).

(7)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등에 관한 신고는 보사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시행령 제11조).

(8)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하도록 했던 면허증을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부하도록 변경했다(시행규칙 제1조).

(9) 보수교육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중앙회는 매년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각 지부, 의대·치대·한의대 및 그 부속병원, 15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으로 정했다.

의료기간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의대·치대 또는 한의대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자로서 환자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 △군 복무 중인 자 △전공의 △질병 기타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사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면제자는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와 면제대상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부장을 거쳐 중앙회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시행규칙 제21조의 2).

(10) 시행령에 들어있던 간호사등 의료인 정원관련 조항이 시행규칙으로 옮겨지면서 별표로 묶여 규정했다(시행규칙 제28조의 4).

9. 제8차 개정

1986년5월10일에 있은 8차 개정(법률 제3825호)은 한의사의 한자명칭(漢→韓)을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시행령 개정은 없었고, 시행규칙은 1986년6월25일(보사부령 제790호), 1986년12월4일(동령 제794호) 2차례 개정했으나 간호관련 조항의 개정은 없었다.

10. 제9차 개정

1987년11월28일 제9차 개정(법률 제3948호)에서는 본문 70조에서 72조로 늘었으며, 공포 4개월후 부터 시행됐다.

시행령은 1989년8월7일(대통령령 제12773호), 시행규칙은 1989년2월28일(보사부령 제827호), 1990년1월9일(보사부령 제840호) 각각 개정됐다.

(1) 간호원, 조산원의 명칭이 간호사(看護師), 조산사(助產師)로 변경됐다(법 제2조).

(2) 조산사도 1년간의 조산수습과정을 마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면허를 부여하도록 했다(법 제6조).

(3) 의료인의 결격사유중 농자·아자·맹자를 삭제했다(법 제8조).

(4) 보사부장관은 의료인 국가시험 관리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9조).

(5) 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 보상등을 위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28조2).

(6) 간호보조원의 명칭을 간호조무사로 변경했다(법 제58조).

(7) 간호사 국가시험의 범위중 「간호 및 의약 관계 법규」를 「간호학 및 의약관계 법규」로 수정했다(시행령 제3조).

(8)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은 10년, 진단서 부분 및 적출물 관련 기록은 3년, 간호기록부등 기타 기록부는 5년으로 조정했다(시행규칙 제18조-1990).

(9)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간호대학이 포함되고, 보수교육 면제대상에 대학원 재학생, 행정기관 및 국·공립 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해외체류·휴업 또는 폐업등으로 당해 연도에 6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추가됐다(시행규칙 제21조의2-1990).

(10) 업무분야별 간호사에 가정간호분야의 간호사가 신설됐다(시행규칙 제54조-1990).

(11)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사 정원기준이 신설되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해 1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하며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하도록 했다(시행규칙 별표4).

11. 제10차 개정

1991년12월14일에 있은 제10차 개정(법률 제4430호)에서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된 데 따른 문구수정만 있었다.

시행령은 1992년6월1일(대통령령 제13657호), 1992년12월31일(동령 제13814호), 시행규칙은

1992년1월16일(보사부령 제887호), 1993년3월3일(동령 제901호) 각각 2차례 개정됐다.

(1) 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인정 신청시 제출서류중 건강진단서 및 신원증명서를 삭제 했다(시행규칙 제55조-1993).

III. 간호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의료인들이 국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고급 전문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므로써 국가적 손실은 물론, 국민보건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법령은 그동안 나름대로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행 의료법령이 지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전체적인 내용이 의사중심으로 규정돼 있으며, 간호사를 비롯한 기타 의료인력은 의료보조자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만 하더라도 간호학 분야의 학문적 체계가 성숙되지 않은데다 간호사의 전반적인 교육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단순 의료보조 축면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현재는 간호학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간호사도 전문의료인력으로써 충분히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는 상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행 의료법령은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기본법 외에 보건의료 영역별 단독법의 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은 만큼 현행 의료법령 체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수정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령중 간호관련 조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정방향을 개괄적으로 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1. 간호사의 임무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법 제3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료의 보조」라는 문구다.

간호행위는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가 아니라 염연히 진료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라 할 수 있으며, 간호사는 이같은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부여하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료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에 대해 본연의 간호업무 보다는 진료보조 업무를 더 많이 부과하는 등 간호사를 전문의료인이 아닌 단순 보조인력으로 남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간호사는 각종 행정업무와 진료보조 업무에 치중하게 되므로써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가중되고 환자에 대한 직접 간호시간도 계속해서 감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료의 보조」 대신 「진료에 있어서의 상호협조」를 명문화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도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의료기관의 개설

법에서는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을 행하는 곳을 의료기관」이라 정의하고,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소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제30조).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 중에서 간호사만이 유일하게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다. 간호사도 타 의료인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같은 규정은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회복기 환자의 요양시설, 노인·만성질환자 관리시설 및 가정간호센타등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간호사에 대해서도 면허수준에 맞는 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국가시험 및 면허교부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 또는 간호학교 포함)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

또한 면허증은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월 이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조).

우선 구제 전문학교 및 간호학교는 폐지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면허증 발급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중 취업 및 각종 시험에 응시하려는 신규간호사들이 필수 구비서류인 면허증 사본을 구비하지 못하므로써 응시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면허증 교부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대신 국가시험 합격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등에 관한 신고는 보사부장관이 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해야 할 뜻과 신고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에 행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11조).

그러나 1962년부터 매년 실시돼 오던 의료인 정기신고제도가 1982년에 폐지된 이후 간호사등 의료인력에 대한 일제신고가 한변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써 정확한 동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의료인력 관리 및 수급대책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모든 의료인은 최소한 매5년 마다 소속 중앙회를 통해 취업상황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5.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의 예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신,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 대학·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판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등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범위 내에서의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법 제25조).

그러나 예외사항을 살펴보면 의과대학 간호학과인 경우에는 의료봉사, 연구 및 시범사업에 따른 의료행위가 인정되지만, 간호대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예외 대상에 당연히 간호대학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6. 중앙회 가입 의무

법에서는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 「의료인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정단체이며, 회원가입에 따른 의무사항을 규정한 중앙회 정관 역시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해당 중앙회 정관에 의한 회원가입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회원가입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중앙회에 대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의료인은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7. 보수교육

법에서는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28조)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의 2)고 규정하여 상충되는 면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7개호에 걸쳐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정해놓고 있어 전체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으로서의 실효성마저 점차 잃어가고 있다.

보수교육의 의의를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근부여부에 관계없이 의료인이면 누구나 법에서 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8. 업무분야별 간호사

업무분야별 간호사는 보건간호분야의 간호사, 마취간호분야의 간호사, 정신간호분야의 간호사, 가정간호분야의 간호사 등 4종을 인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54조).

이들은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써 1년 이상의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보사부장관으로부터 해당 분야별 간호사 자격증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업무분야별 간호사에 대한 자격기준과 교과과정만 규정해 놓고 있을 뿐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은 명문화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업무분야별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개칭하는 한편, 이들의 전문간호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도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

아울러 간호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응급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간호 분야를 개발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는 「법 제25조의 규정(무면허 의료행위등의 금지)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법 제58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사부장관은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호사등의 정원의 일부를 간호주무사로 충당」(시행규칙 제28조의 6)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에 근거를 둔 간호조무사의 충당 비율은 「입원환자 5인 이상을 수용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이내」(보사부고시 제90-26호)이다.

간호조무사제도는 지난 1967년 국가정책의 일

환으로 간호사들이 서독등 해외로의 진출이 급증해지면서 국내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생겨나 지금까지 계속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간호보조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보조업무 및 행정보조업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간호사 인력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한다거나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 대해 의료인인 간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울러 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 취지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리고 현 의료상황에 비추어 간호조무사인력이 반드시 필요로 된다면, 간호사 정원과는 별도의 정원기준을 마련하고 업무별위도 새로이 설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간호사 정원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치과의원에 두는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한다」 그리고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는 「연 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만 다르고 그 외는 종합병원등과 동일하다 (시행규칙 별표4).

간호사 정원기준은 1962년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간호업무의 다양화 및 전문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국민보건의식 향상으로 절적 간호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간호사들의 업무량은 점점 더 과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특수진료부서 및 지원부서, 간호행정부서 등이 확대되면서 단순히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수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간호사인력의 30% 정

도가 이들 부서에 배치됨에 따라 실제 병실근무 간호사 인력은 절대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현행 간호사 정원 기준마저 미준수하고,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등 위법사례를 보편화하므로써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합리적인 간호사 정원 설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환자수 대비에 의한 산정방법을 환자분류체계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전환하여 보다 합리적인 간호사 정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환자분류체계를 적용한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반병실의 경우는 현재의 환자 5인대 간호사 2인의 비율을 4대2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중환자실·응급실·수술실 등 특수진료부서와 지원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함께 법정 간호사 정원이 제대로 확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이 요망된다.

IV. 결 론

지금까지 건국이후 우리나라 의료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처음 제정된 국민의료법을 시작으로 해서 현행 의료법령에 이르기까지 간호관련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와함께 의료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현행 의료법령중에 포함된 간호관련 조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나름대로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간호사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간호사들이 복연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에는 의료법령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이 크게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령중 간호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이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행 의료법령중 간호관련 조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연구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의료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새로운 간호관계법령의 개발연구와 함께 간호단독법 제정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김기령, 신의료법 해설, 대한의학협회, 1979.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 법령집,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1973~1992.

박일상, 보건의약법규 해설, 형설출판사, 1976.

법제처,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제37권), 한국법제연구원, 1990.

이영자, 한국간호관계법령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 간호관계법령에 이상있다—의료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 19·3(5,6) 1980.

조석재, 보건사회법령집, 동명태백출판사, 1968.